

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

의안 번호	244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6. 30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정이유

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반부패·청렴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문화 조성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, 공직자 및 부패행위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

나.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구청장 책무 및 공직자 의무(안 제3조 및 제4조)

- 구청장의 책무로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책임 규정과 법령 준수·공정한 직무 수행·일체의 부패행위 금지에 관한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함

다.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등(안 제6조 및 제7조)

- 매년 청렴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며,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, 기념품 제공의 근거를 규정함

라. 정기 청렴교육 및 반부패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 및 제10조)

- 매년 1회 이상,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실시 및 체계적인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근거를 규정함

마. 청렴도 조사 실시 및 청렴포상 등(안 제11조 및 제12조)

-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외부 기관 위탁 근거 및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함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7조

나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, 제53조

다.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2조, 제3조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기 예산 편성됨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19538호, 2025. 5. 7.)

라. 입법예고: 2025. 5. 7. ~ 5. 28.(21일간) / 의견 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구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·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직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소속된 공무원

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에 따른 공무원

다. 「청원경찰법」에 따른 청원경찰

라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

2. “부패행위”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공직자의 청렴의무)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

다.

제6조(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)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(이하 “종합대책”이라 한다)을 수립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
2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, 추진목표 및 전략
3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· 추진과제
4. 그 밖의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 · 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시행 등)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
2.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
3. 청렴도 향상 사업
4. 청렴도 평가 · 조사 사업
5.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 · 설문조사
6.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· 운영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·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

6 (제275회-행정자치위제1차부록)

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)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으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, 소속,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·이용되어야 한다.

제9조(청렴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,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청렴도 조사)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도 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공직자는 자료제출,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.

제12조(청렴포상 등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
2. 제7조에 따른 설문조사, 홍보사업, 공모전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·응모하여 당첨된 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근거법규

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부패행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제3조(공공기관의 책무)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.

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,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.

③ 공공기관은 교육·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직자의 청렴의무)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

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“경력직공무원”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2. 특정직공무원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③ “특수경력직공무원”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무직공무원

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

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2. 별정직공무원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제53조(청렴의 의무)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(謝禮)·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.

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□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무직”이란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본청·의회사무국·보건소·문화의전당·구립도서관·동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, 규칙, 규정, 단체협약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②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울산광역시 중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, 운동선수 등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 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 제정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그 비용이 공개된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3. 작성자

- 소 속: 기획예산실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- 성 명: 배선영
- 연락처: (052)290-3114